

■ 최신 법령 ■

[노동]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황인영 변호사 | 강재영 변호사

1. 개정 이유

파견근로자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, 상여금, 성과금,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·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여금, 성과금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내용

가.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제7호 중 “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”를 “다음 각 목의 사항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
- 나. 정기상여금,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
- 다.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
- 라.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

나.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제3호 중 “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”를 “다음 각 목의 사항에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.

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
- 나. 정기상여금,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
- 다.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
- 라.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

3. 다운로드 : [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](#) 및 [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](#) 개정(법률 제11668호 및 법률 제11667호)